

물이 여는 미래, 물로 나누는 행복
물관리 일원화, 국민과 함께 새로운 물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.



한국수자원공사



수신자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장

(경유)

제목 건설안전점검기관 지정을 위한 추천명부 등 요청

1.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, 건진법 제62조(건설공사의 안전관리) 관련입니다.

2. 위 관련, 발주자가 건설안전점검기관을 지정하도록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공사 건설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한 안전점검 수행기관 추천명부를 아래와 같이 요청드립니다.

가. 관련근거

-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(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방법 등)
-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(국토부고시 제2020-47호)

나. 요청사유

-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개정에 따른 세부평가기준 마련 전 법정절차 이행

다. 안전점검 수행기관 추천명부 세부내용

- (자격) 시특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
- (실적)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경험이 풍부한 업체
(최근 5년간 실적포함)
- (분야)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분야 중 토목(교량 및 터널, 수리), 건축, 종합

라. 회신기한 : 2020.4.16.(목)

3. 아울러, 우리공사가 시행중인 건설공사(댐, 상하수도, 건축물 등) 특성에 맞춰 건설안전점검이 가능한 안전진단전문기관 업체현황(참여과업·발주기관, 기술자 현황·실적, 신용도 등)을 붙임양식에 따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추천명부 등 작성양식 1부(별도첨부). 끝.

